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권덕철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리베이트 제공 약제에 대하여 급여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사유에 공공복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때를 추가하는 등 관련 과징금 사용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며, 2022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2021년도 제19차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내용으로 변경하여 반영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2022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1만분의 “686”에서 “699”로,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“201.5원”에서 “205.3원”으로 각각 변경함(안 제44조)

‘공공복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’되는 사유로 부과한 과징금 수입은 「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전액 사용하도록 함(안 제71조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(2021. . . ~ . . .)
3) 행정규제 :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4조제1항 중 “686”을 “699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201.5원”을 “205.3원”으로 한다.

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99조제8항에 따른 과징금”을 “법 제99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71조의 제1항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4조(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)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만분의 686으로 한다.	제44조(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) ① ----- ----- ----- 699로-----.
② 법 제73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201.5원으로 한다.	② ----- ----- 205.3원-----.
제71조(과징금의 지원 규모 등) ① 법 제99조제8항에 따른 과징금의 용도별 지원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71조(과징금의 지원 규모 등) ① 법 제99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-----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②·③ (생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